

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사항

부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

1. 시설 · 인력 현황

시설명	부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
급여종류	주야간보호
이용정원	61명

직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배치하며, 시설장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요양보호사, 사무원, 조리원, 영양사, 운전원 등 각 직종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.

2.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

급여종류: 주야간보호
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욕구사정 결과 및 수급자·보호자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

3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계약기간

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며,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. 계약기간 만료,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동,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.

② 이용계약

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급자가 치매·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는 계약목적, 계약당사자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 및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, 계약 체결 후 1부는 계약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합니다.

③ 이용절차

이용신청 → 자격확인 → 서류확인 → 급여제공계획 수립 → 이용계약 → 공단 통보 → 서비스 제공

4.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

장기요양급여 이용료는 매년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른 수가를 적용합니다.

구분	내용
일반 수급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본인부담
감경대상자	해당 감경률 적용
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급여비용 본인부담금 0%
월 한도액 초과분	수급자 전액 부담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 1식 2,000원

비급여 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서에 반영합니다.

5.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

센터는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을 가입·관리하며,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적용합니다.

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을 확인·기록하며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.

※ 본 자료는 부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·정리한 자료입니다. 보험의 정확한 가입상품, 보험회사 및 가입기간 등은 현재 가입된 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릅니다.